

# 경영위원회규정

제본 및 복사본은 Uncontrolled Document임



TRINITY AIRWAYS



## 유효 페이지 목록

페이지	개정 번호	개정일자
표지	7	12 MAY 2026
개정기록표	7	12 MAY 2026
유효페이지목록	7	12 MAY 2026
목차	7	12 MAY 2026
<b>제 1 장 총 칙</b>		
1-1	4	01 FEB 2024
<b>제 2 장 구 성</b>		
2-1	5	27 JUN 2025
<b>제 3 장 회 의</b>		
3-1	3	13 APR 2023
3-2	7	12 MAY 2026
3-3	7	12 MAY 2026
<b>제 4 장 부 칙</b>		
4-1	7	12 MAY 2026

페이지	개정 번호	개정일자
Approved by 이사회		
이사회 승인 득 (2026.05.12)		

## 목 차

### 제1장 총칙

1.1 목적	1-1
1.2 적용범위	1-1
1.3 기능	1-1

### 제2장 구성

2.1 구성	2-1
2.2 위원장	2-1

### 제3장 회의

3.1 개최시기	3-1
3.2 소집권자	3-1
3.3 소집절차	3-1
3.4 결의방법	3-1
3.5 관계인의 의견청취	3-1
3.6 결의사항	3-2
3.7 이사에 대한 통지	3-2
3.8 이사회 의 재의결	3-2
3.9 의사록	3-2
3.10 간사	3-2
3.11 규정의 제정 및 개폐	3-3

### 제4장 부칙

4.1 시행일	4-1
---------	-----

## 제1장 총 칙

### 1.1 목적

본 규정은 주식회사 **트리니티**항공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의 정관 제38조 및 이사회규정 3.4에 의거하여 경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1.2 적용범위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1.3 기능

위원회는 이사회 의 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며,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.

본 규정은 Uncontrolled Document임

## 제2장 구 성

### 2.1 구성

- 2.1.1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 및 해임한다.
- 2.1.2 위원은 회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- 2.1.3 위원의 임기는 법령,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시점까지로 한다.
- 2.1.4 경영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.

### 2.2 위원장

- 2.2.1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- 2.2.2 위원장 유고시는 EVP1, EVP2, SVP1, SVP2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체 례 및 복사본은 UNCA

## 제3장 회 의

### 3.1 개최시기

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# 3.2 소집권자

3.2.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3.2.2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경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### 3.3 소집절차

3.3.1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와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에게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

3.3.2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3.3.1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 3.4 결의방법

3.4.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3.4.2 위원회는 위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 또는 동시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3.4.3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3.4.4 3.4.3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# 3.5 관계인의 의견청취

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당해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# 3.6 결의사항

- 3.6.1 위원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한다.
- 3.6.2 3.6.1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다.
  - 3.6.2.1 지점의 설치, 이전, 폐지에 관한 사항
  - 3.6.2.2 매각 후 책임차 방식을 포함한 항공기 임차에 관한 사항
  - 3.6.2.3 매각 후 책임차 방식을 포함한 엔진 임차에 관한 사항
  - 3.6.2.4 외화지급보증 및 예금담보 제공 등 항공기 및 엔진 임차 관련 부수 계약의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 - 3.6.2.5 경영목표 및 평가,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  - 3.6.2.6 이사회 기결의 사항 중 중요내용의 변동 없이 갱신 또는 연장이 필요한 사항
  - 3.6.2.7 자산총액의 1% 이상 3% 미만 투자 및 자산취득에 관한 사항(예·적금 제외)
  - 3.6.2.8 자산 재평가에 관한 사항
  - 3.6.2.9 이사회로부터 위원회에서 결의하도록 위임받은 사항

### 3.7 이사에 대한 통지

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 3.8 이사회의 재의결

이사회 구성원 1/3 이상의 이사가 경영위원회에서 심의, 의결한 사항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할 경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.

### 3.9 의사록

- 3.9.1 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3.9.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 및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반대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.

### 3.10 감사

- 3.10.1 위원회는 감사 1인을 둘 수 있다.
- 3.10.2 감사는 위원장의 지시, 감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### 3.11 규정의 제정 및 개폐

3.11.1 본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3.11.2 본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, 이사회규정 및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## 제4장 부 칙

### 4.1 시행일

- 4.1.1 본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로 제정, 시행한다.
- 4.1.2 본 규정은 2019년 3월 29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- 4.1.3 본 규정은 2022년 10월 20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- 4.1.4 본 규정은 2023년 4월 13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- 4.1.5 본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- 4.1.6 본 규정 2.2.1은 2025년 6월 27일부로 개정, 시행하며, 2.2.2는 2025년 7월 1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- 4.1.7 본 규정은 2025년 10월 21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- 4.1.8 본 규정은 2026년 5월 12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